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13]
의견서

2020. 8.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법안 요지

- 본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 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언론중재법의 근본적 입법목적과 부조화

-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음. 즉, 기존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이력을 덧붙임으로써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러한 잠정적, 균형적인 조치를 넘어 기사 자체가 삭제·차단되어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써, 이는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3.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침해 우려

- 본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

로 침해하는 경우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 표현물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잠정적 판단에 따라 기사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 공인 및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가 지워지게 되고, 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높음.
- '사생활'은 법적으로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개념임. 사생활과 관련된 표현물이라도 공인의 도덕성, 신뢰성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음. 또한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악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법원의 가처분 절차 등을 통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예방 및 신속한 구제가 가능함. 본 개정안이 도입되어 이러한 추상적 기준으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허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의 열람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면, 공적 인물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음.

<끝>